

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

1. 제정 목적

-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 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관련 법령

- 방송법 제88조 및 제89조

제88조(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)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3. 시청자평가원의 선임
4.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제89조(시청자 평가프로그램)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3. 적용 대상

- 방송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,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

4. 주요 내용

1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자격

(1) 선임

- 시청자위원회는 평가원 선임 시에 후보자의 전문성, 시청자 대표성, 전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 - 또한, 후보자 선정 시 연령과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청자평가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시청자위원회는 신임 평가원이 선임되면, 해당 평가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·역할·보수·법적 근거를 포함한 시청자평가원제도를 해당 평가원에게 설명한다.

(2) 임기

- 시청자평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다만, 연임 결정 시에 반복 선임으로 인하여 비평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한다.

(3) 결격사유

-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평가를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 사유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않는다.
 -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
 -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
 - ③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(예비)후보자로 등록한 자
 - ④ 공무원(교육공무원 제외)
 - ⑤ 해당 방송사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⑥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 중인 자
 - ⑦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2 시청자평가원 직무 및 운영

(1) 직무

-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진술한다.
 -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.
- 시청자평가원은 시청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.

(2) 운영

-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직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.

-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가 작성한 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으로부터 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의 정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.
 - 다만, 정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위법·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.
- 방송사업자는 「시청자평가원 월간보고서」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(3) 활동비 등

- 방송사업자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를 매월 지급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3 기타

- 방송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, 이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.

5. 시행일

- 이 가이드라인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6. 재검토 기한

-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